

서 면 질 문 답 변 서

(비 회 기 중)

【박종국 의원】

- 서면질문서 제출
 - 2009년 7월 21일 제출
 - 2009년 7월 23일 시장에게 이송
- 서면답변서 제출
 - 2009년 7월 31일 시장 제출

□ 질 문

- 희망근로 1차모집 시 선발기준, 2차모집 시 선발기준(모집인원 포함)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권장내용이 있으면 자료 제출 바람.
- 도시미관과 초과근무수당 지급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4월~6월).
 - 세콤사본
 - 개인별(팀별로 분류), 일자별 초과시간, 수령금액
 - 초과근무 신청(기안) 사본, 근무명령서 사본
 - 초과근무일지 사본, 단속증거와 단속실적(일자별, 담당구역별)

□ 답 변

- 희망근로 1차모집 및 2차모집 시 선정기준(모집인원포함)에 대하여
 - 희망근로사업 지침이 지난 5.1일 시달되어 사업추진 T/F팀을 5월7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7월 27일 현재 총 122사업에 1일 4,259명이 근로하고 있음.
 - 희망근로자 1차 모집은 5.12일부터 5.20일까지 4,826명이 접수되었으며 선정과정의 결격자 및 포기자 발생으로 인한 결원과 추가 사업의 신규

근로자를 보충하고자 6.15일부터 6.23일까지 2차 모집을 실시 4,176명이 접수되었음.

- 희망근로 참여자격은 부천시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자로 1·2차 모집 선정기준은 가구 소득, 재산세 납부액, 자동차세 납부액, 세대주 유무, 부양가족 수 등 11항목을 심사하여 접수 순으로 근로대상자를 선정하였음
- 근로자 배정 시 차상위 계층 우선배정, 희망 사업장 배정, 근거리배정, 연령별 노동 강도 등을 고려 배정하여 민원 최소화와 효율적 사업추진의 기반구축을 완료하였음

지역경제 과장	지역발전 정책국장	차관보	차관	장관

희망근로 프로젝트 종합지침(안)

2009. 5. 11.



행정안전부

제4장

신청자 접수

1. 신청 대상자의 범위

가.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재산이 1.35억 원 이하인 자를 우선 선발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선정할 수 있음

- 신청자들에 대한 순차적 선발을 위하여 '선발기준 점수표' 활용
 - ※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자임이 증명된 자는 선발기준 점수표 적용 제외

- 실업자·실직자 등에 일자리제공을 통한 생계지원이 동사업의 주요목적 중 하나인 바, 연령대별 실업률에 따라 근로자 선발 규모를 달리할 수 있음
 - 청소년 실업자의 경우 만15세- 17세 포함
 - 시·도 연령대별 실업률에 따라 선발규모 차등 적용

(예시)

- 도시지역 : 15세~39세(50%), 40세~59세(30%), 60세 이상(20%)
- 농촌지역 : 15세~39세(20%), 40세~59세(40%), 60세 이상(40%)

<연령대별 실업률>

(‘09. 3 전국 기준)

연 령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실업률(%)	12.0	8.7	3.9	2.9	2.4	1.4

- 개별사업의 노동강도에 따라 지자체 자율로 연령제한을 둘 수 있으며, 특별한 기술·자격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 대상자 범위 외의 자도 참여 가능

나. 배제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 공공근로사업 3단계 이상 연속 참여 중이거나 중도포기자
- 신청일 현재 기타 유사목적의 정부지원사업 참여자
 - 예 : 사회적 일자리·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등 일모아 시스템에 등록된 자

2. 신청자 접수기간 및 구비서류

가. 신청자 접수기간

- 참여대상자 신청접수는 신청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되, 사업특성 등에 따라 사업별로 별도 기간을 정하여 접수 가능

※ 참여자 모집 공고문(안) : 붙임2 참조

- 신청기간 후에도 결원 발생시 수시로 별도 기간을 정하여 추가 접수 가능

나. 신청 구비서류

- 희망근로사업 신청서

▷ 「표준 신청서 서식」 : 붙임3 참조

- 신청자 본인이 포함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등 부과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갈음할 수 있음(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보호증 제출)

▷ 사업시행기관별로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의 증빙서류 징구

3. 신청서 접수 및 처리절차

가. 주소지 신청 원칙

- 이중신청 방지, 참여자격의 적격여부 검색을 위하여 주소지(주민등록 소재지) 시·군·구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접수 원칙
- 노숙자 증빙서류 소지자는 주소지 이외지역 신청 허용

나. 접수처 및 처리절차

- 사업참여 신청서를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접수창구에 비치하여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접수대장을 관리
- 신청서를 접수한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신청자는 신청서를 해당지역 시·군·구 지정 접수처에 송부
 - ▷ 우편송부는 신청기간내 소인이 찍힌 것까지 유효하게 접수 처리
- 신청접수기관 안내
 - 자세한 내용은 자치단체별 안내자료 참조

다. 신청서 접수절차

- 유사 사업을 사업군(群)으로 대분류하고,
- 당해 사업군에 열거된 단위 사업 중 3개 사업까지 접수
- 다만, 특별자격이 요구되거나 임금단가 등이 차별화되어 별도로 신청서를 접수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사업별로 신청서를 접수
 - ▷ 신청자 본인의 희망과 특성을 고려한 사업배치를 위한 조치
 - ※ 이 지침에 의한 사업분류를 참고하여 사업시행기관 실정에 적합하게 사업군 별로 분류하고, 신청자는 사업군 중 3개사업까지 신청 가능

4. 사업시행기관의 조회·확인 내용 및 방법

가. 가구 소득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으로 확인

나. 재산세, 자동차세 납부액 : 지방세 자료로 조회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여부 : 사회복지담당 경유

라. 공공근로사업 연속 3단계 참여 여부 : 공공근로시스템 등 시군구 공공근로 DB 이용(시군구 공공근로 담당자)

마. 타 정부지원사업 참여자 여부 : 「일모아시스템」 이용

바. 장애인 여부 : 사회복지(장애인)담당 경유

1. 선발 주체

- 각 시·도 및 시·군·구 등 희망근로사업 추진 기관

2. 선발 절차 및 방법

가. 배제사유 조회·확인

- 범위 : 신청자 본인
 - 배제사유 대상자가 수급을 포기하고 참여 신청할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 참여가능
 - 유사 정부지원사업 참여자 : 참여 가능하나, 감점사유
- ※ 공공근로 연속 3단계 참여를 시작한 자는 중도포기자도 배제사유

나. 선발기준 및 증빙자료

- 가구소득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으로 판단
 - 가구의 범위 : 신청자 본인이 포함된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구성원 기준으로 판단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0원”으로 간주
 - 의료급여 수급자(의료보호증 소지자)
 - 세대를 달리하는 자녀에게 피부양자로 등록된 부모의 경우
- 재산 : 주민등록상 세대기준으로 재산세 납부액 합산하여 판단
- (여성)세대주·부양가족
 - (여성)세대주 :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주를 원칙으로 하며, 여성가장 판단에 있어서는 실제 세대를 부양하는 여성에 대하여만 가점 부여
 - 부양가족 : 주민등록등본에 의한 확인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자
- 자격 또는 경력·능력 : 해당사업과 관련 있는 자격증을 소지하였거나 유사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자나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

다. 참여자 선발절차

- 사업군별 신청자와 세부사업별 신청자의 분류
- 세부 사업별 신청자에 대한 배제대상자 여부 판단
- 선발기준 점수표에 따라 점수 부여 및 점수의 합산이 최고점인 순서에 의한 참여자 선발

라. 참여자 선발시 고려사항

- 특정사업에 신청자가 집중되고, 여타 사업에 미달하는 경우 신청 이외의 사업에 선발 가능
- 선발기준 점수의 합산점이 동일한 경우는 사업시행 기관별 가중치 부여순서에 따라 순위 결정 원칙
 ※ 필요시 사업시행기관별로 동일 점수자 우선 선발기준 마련
- 주민등록상 1가구 1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음. 특히 청년실업자의 경우 1가구 2인 참여 가능
- 선발인원이 사업인원을 초과할 경우 순위별로 예비대상자를 미리 선정하여 결원 발생시 즉시 채용할 수 있음
- 정부의 훈령·예규·지침 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무능력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됨이 원칙

예시) 연령 제한없이 「국민기초생활보장 2009년도 자활사업 안내」
(보건복지가족부) pp.17-18 원용

《선발기준 점수표 (표준안)》

고려요소	판단기준	배 점	비 고
가중치 130점			
소득	4등급분류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30(30,20,10,0)	※아래기준 참조
세대재산	4등급분류 (재산세 납부액 기준)	30(30,20,10,0)	※아래기준 참조
세대주	여, 부	10(10,0)	
여성가장(세대주)	여, 부	15(15,0)	
부양가족수	3명이상, 2명, 1명, 없음	15(15,10,5,0)	
승용차소유	자동차세 납부액 기준 24만원이하, 24만원 초과	10(10,0)	※별도분류 가능
장애인 및 장애인 부양가정	여, 부	5(5,0)	
청년실업자 여부	여, 부	10(10,0)	
기타 지자체 판단	지자체에서 특별히 고려할 사항	5(5,0)	실적기간 등
감점사유 -35점			
유사 정부지원사업 중도 포기자	공공근로사업, 노동부·복지부 취업지원사업 등	-30	
기타 지자체 판단	지자체에서 특별히 고려할 사항	-5	

※ 지자체 여건과 실정에 따라 「희망근로 추진위원회」에서 기준 조정 가능

※ 소득 등급 기준 : 별첨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보건복지가족부 기준자료)를 참조하여
가구별로 최저생계비 기준 100%이하, 120%이하, 150%이하, 150%초과 등으로 분류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 붙임6 참조

《재산세 납부액 등급 기준(예시)》

추정재산액	1.35억원	2억원	3억원	3억원초과
재산세납부액 (원/년)	272,250	438,000	813,000	813,000초과

마. 선발의 효력

- 최초 선발시 당해 사업이 단기간에 종료되더라도 선발시점부터 6개월간은 최초 선발의 효력이 유지되어, 타 사업으로 재배치 되더라도 재선발 절차 불요

바. 선발자 관리

- 선발자가 확정된 경우 선발자 인적사항 및 임금지급 현황을 「일모아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
 - ※ 일모아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숙지

3. 선발자 배치 및 근무지 조정

가. 선발자의 사업 배치

- 대분류 사업군의 일반사업에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1순위 희망사업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 희망사업이 없거나 특정사업에 희망자가 편중되어 사업별 조정·배치가 필요한 경우, 전직(前職), 특기, 학력,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배치
 - ※ 사업 참여자 또는 대기자가 사업시행기관을 달리하는 타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담당자가 신청자와 상담하여 결정

나. 사업 근무지의 조정

- 선발계획인원에 비하여 신청자가 적은 경우
 - 타 사업시행기관(시도, 시군구) 신청자를 수요가 있는 당해 기관의 사업에 투입 가능
 - 임금지급 등은 기관(시도, 시군구)간 협의 결정

참여자 모집 공고 (표준안)

- 시·도 및 시·군·구 공고 제 ○○호 -

「2009 희망근로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안)

경제위기 극복과 근로의사가 있는 국민에게 일터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시·군에서 추진하는 「2009 희망근로 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명칭 : 2009 희망근로 사업
- 사업기간 : 2009. 6월 ~ 11월
- 모집기간 : 2009. 5. . ~ 5. .
- 모집인원 : ○○○명
- 참여자격 :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 소정의 심사를 거친 자
 - *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 공공근로사업 3단계 이상 연속 참여 중이거나 중도포기자
 - 신청일 현재 기타 유사목적의 정부지원사업 참여자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기타서류(필요시 안내)
- 근무여건 : 주 5일, 1일 8시간, 임금 1일 33,000원(일부 상품권 지급)
4대보험 가입, 주·연차 유급휴가, 간식비·교통비 별도지원
- 사업내용 : ○○사업 등
- 참여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2009. 5. .

○○ 시장 · 군수 · 구청장

희망근로 참여 신청서(표준서식)

접수번호						(신청일자 : 2009. . .)	
성명	(인) 남, 여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전화번호			
주요이력사항	최종학력 및 전공		학교(재학, 중퇴, 졸업), 전공 :				
	자격면허	1. 2.					
	혼인	①기혼 ②미혼 ③기타	세대주	①해당 ②해당없음	부양가족 (*세대인원)	(* 인 인)	
	취업관련	①실직 ②미취업	실업기간	년 월	전직업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기타	
	신장	cm	체중	Kg	교정시력	좌(), 우()	색맹
기타사항	주거상태	자개(), 전세(), 월세(), 기타()					
	세대원소득	월	만원	재산상황	부동산 백만원, 동산 백만원		
희망사업	① ② ③			경력 사항 기재			
기타사항 (본인)							
기타 유사 정부지원사업 참여여부				기간 및 참여사업 :			

※ 참고

1. 동 신청서 제출 시 참여 자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소득, 재산 등 관련 자료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필요시 여타 동의서를 징구할 수 있음
2. 사업 참여자 선발시 정부의 「일모아시스템」에 개인정보가 등록·관리됨을 알려드립니다.

